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9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022. 3. 8.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안전이 확보된 식품의 신속한 통관을 위해 우수수입업소의 계획된 수입 물량에 대해 신속히 통관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으나 신청 및 승인 시기를 연 1회로 제한하고 있는 등 수입자가 제도 활용에 한계가 있음

이에 해당 제도의 신청 및 승인 시기를 연중으로 확대하고,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 절차에 대해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 생략 절차 구체화(안 제7조의2)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최근 3년간 연 5회 이상 수입신고한 품목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경우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생략하는 절차에 대해 최근 3년간 수입실적의 기준일 등 절차를 명확히 하고, 연 중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 공고 제2022-87호, 2022.2.11.(2022.2.11.~3.3.)

2) 규제심사 비대상 분류 : 제2022-312호(2022.1.2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2-19호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1-62호, 2021. 7.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2년 3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차년도 계획 수입량”을 “연간 계획 수입량”으로, “차년도 계획수입”을 “연간 계획수입”으로, “제출”을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을 “연간 계획수입 신청”으로, “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지”를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의 생략 대상에 해당하는지”로, “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를 “연간 계획수입 확인서”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

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계획 수입량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

④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서 정한 최근 3년간의 수입신고 이력은 신청한 달의 이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차년도”를 각각 “연간”으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연락처	
영업소	명칭(상호)	영업등록번호	
	대표자	우수수입업소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제품명	한글명	유형	
연간 계획 수입량(순중량)	kg	예상되는 과세가격	(단위:US\$)
용도	세번부호 (HSK 번호)		
생산국(제조국)		수출국	
해외제조업소	등록번호	회사명	
	주소		
수입신고시 제출 필요한 첨부서류 목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및 「수입 식품등 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귀하

유의사항								
1. 수입식품등의 연간 계획수입 신청서는 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의 수입량을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 최근 3년간의 수입신고 이력은 신청한 달의 이전달 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 목록을 기재하고 첨부서류 예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4. 계획수입 신청한 수입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9에서 정한 검사생략 대상 요건에 맞지 않거나 별표9 제2호다목에 따라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가 생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small>신청인</small>	→	접 수	→	검 토	→	결재	→	확인서 발급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의2(검사 생략 절차 등) ① 법 제7조에 따라 우수수입업소로 등록된 자가 <u>차년도 계획 수입량</u>에 대해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제2호나목의 서류검사 및 같은 호 다목의 현장검사를 생략받고자 하는 경우, 영업등록을 관할하는 지방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u>차년도 계획수입 신청서</u>(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② 지방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u>차년도 계획수입 신청</u>을 받은 경우, <u>다음 각 호 모두를 충족하는지</u> 확인한 후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u>차년도 계획수입 확인서</u>(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할 수 있다.</p>	<p>제7조의2(검사 생략 절차 등) ① -- ----- ----- <u>연간 계획 수입량</u> ----- ----- ----- ----- ----- ----- ----- <u>연간 계획수입</u> ----- ----- ----- <u>연간 계획수입 시작되는 달의 전달 15일까지</u> 제출----- ----- ----- ② 제1항에 따른 <u>연간 계획 수입량</u>은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을 기준으로 한다.</p> <p>③ ----- ----- <u>연간 계획수입 신청</u> ----- ----- <u>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 따라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의 생략 대상에 해당</u> 하는지 ----- <u>연간 계획수입 확인서</u> -----</p>

1. 최근 3년간 해당 해외제조업소
에서 해당 품목의 부적합 이력
이 없는 경우

2. 신청인이 최근 3년간 연 5회 이
상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한 경
우

<신 설>

③ 지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계
획수입 확인서를 발급받은 수입
식품등이 수입신고 되는 경우에
는 계획 수입량에 대해 제1항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시
행규칙 별표9 제2호다목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삭 제>

<삭 제>

④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
제2호가목 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단서에서 정한 최근 3년간의 수
입신고 이력은 신청한 달의 이전
달 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⑤ ----- 제3항-----

